

1999. 9. 17

제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도시위원회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9. 9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9. 9. 9
다. 상정일자 : 1999. 9. 14 (제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업경제과장 김 광 용)

가. 제안이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완화(폐지)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 현행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의 전조 삭제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9. 2. 8)
- 제23조(환매권의 유보)의 전조 삭제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99. 8. 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동수)

상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례의 정비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역경제력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반면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질의자 : 김병창 위원)

-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후 양도나 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전면 해제하면 경제 활성화 및 분양 촉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투기등 부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나. 답변요지 (답변자 :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 법 개정으로 분양 촉진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땅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분양계약서, 임대 계약서 등에 방지대책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5. 소수의견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